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(학)분진학원(강원관광대학, 분진중학교)의 '2009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'2010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 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.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우리의 의견으로는 (학)분진학원(강원관광대학, 분진중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.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(학)분진학원(강원관광대학,분진중학교)의 2010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법인 및 교비회계의 2002년 2월 28일 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과 법인회계의 설치학교 금액에 대한 회계기록의 부재 및 부실로 대차대조표에 대한 의견은 표명하지 않습니다.
(다음: 시정사항 별첨)

2010. 5. 14

학교법인 분진학원

감사 강 윤

감사(회계사) 유 동

등록번호: 2459

피감사자(입회인)

소 속 : 분진학원 법인사무국장

유 재 호

소 속 : 강원관광대학 행정지원처장

김 창 준

소 속 : 분진중학교 행정실장

민 응 규